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75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 의 자 : 허 영 · 서영교 · 이강일
윤종균 · 홍기원 · 임호선
김성환 · 박 정 · 박상혁
위성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나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가기관 등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 제25조

의2 신설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성과 신뢰성”을 “안전성,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
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에너지 효
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의 개발을 위한 지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 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자
(이하 “데이터센터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
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데이터센터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센터사업자가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때에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보고 및 공개의 방법·절차, 지속가능성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u>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u>안전성과 신뢰성</u>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u>안전성,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① (생략)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
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 기술의 개발
을 위한 지원

<신 설>

제25조의2(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자(이하 “데이터센터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데이
터센터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
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데이터
센터별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
가스 배출량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센터사업자가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
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이 인공지능 데
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

프라 시설을 구축할 때에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보고 및 공개의 방법·절차, 지속가능성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